

# 통합 취약점 관리 포탈 시스템

Vulnerability Management Portal System



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취약점 관리의 통합!!  
일원화된 관리 프로세스 제공

Omni-VM은 다양한 취약점 진단 솔루션을 연동하여,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취약점 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하고, 보안지수를 산정하여 높은 가시성의 보안 현황을 제공하는 통합 취약점 관리 포탈 시스템입니다.

## Overvie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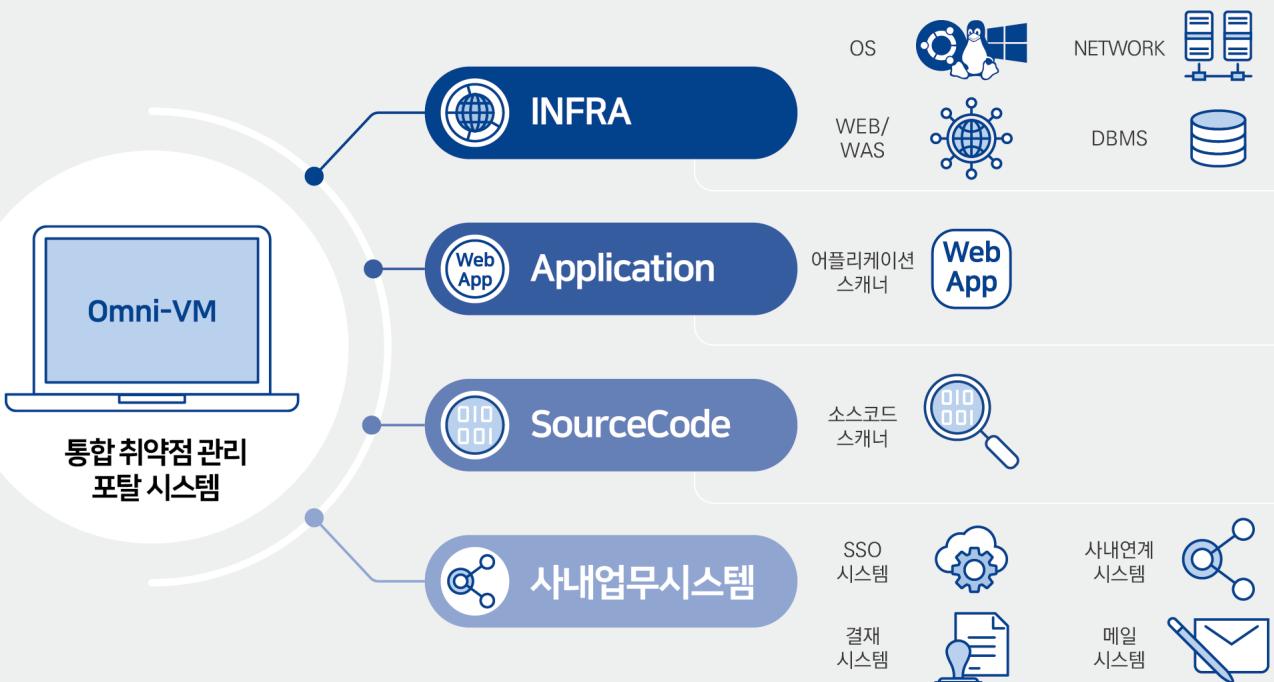
### 금융보안 규제 패러다임이 타율적 규제에서 원칙중심의 자율 규제로 변화

- 자체 점검 및 책임을 강화하고 IT보안 역량 향상 도모
- 민간 자율의 보안성 검토 체계를 구축하고, 금융 보안 리스크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강화

### 효율적인 취약점 통합 관리의 필요성 증가

- 다양한 진단 도구에 대한 관리 포인트의 증가
- 전사 취약점 현황에 대한 가시성 있는 정량적 표현 요구사항 증가
- 진단 결과에 대해 자산 및 중요도 별 보안지수 산정의 어려움
- 통합된 취약점 현황 화면 필요

## Omni-VM 연동 범위



## Omni-VM 주요기능



### 취약점 통합 관리

- 다양한 취약점 진단 솔루션 연동
- 자산 시스템과의 연계
- 관리적/물리적 취약점 및 컨설팅 내역 등록 및 관리
- 취약점 점검 결과를 단일 인터페이스로 제공



### 취약점 관리 프로세스 확립

- 취약점 점검부터 조치 이행까지의 프로세스 제공
- 각종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
- 취약점 관리 업무 프로세스 별 역할 정의
- 프로젝트 단위의 취약점 관리 지원(보안성 검토)



### 취약점 진단

- 웹포탈을 통한 다양한 진단 솔루션 자동진단 수행
- 특정 사유 및 기간을 설정하여 예외 처리
- 지연/누락 업무에 대한 알람
- 취약점 결과 및 이행 내역 관리



### 보안 취약점 현황 제공

- 진단 결과에 대해 전사 보안지수를 제공
- 개별 진단 도구의 취약점 리포트 제공
- 취약점 결과 현황을 차트 및 다양한 형태로 제공
- 각 주요 상황에 대한 통계 자료 제공

## Omni-VM 특장점

### 사용자 측면

- 반복적 수작업을 최소화하여 보안 업무 생산성 향상
- 점검 및 조치 프로세스의 정립은 보안 및 시스템 운영자의 업무 역할을 명확히 함
- Web을 통해 사용자 역할 및 권한 별 UI 제공

### 관리자 측면

- 조직의 성격에 맞는 일원화된 보안 취약점 관리 업무 프로세스 구축
- 다양한 시스템의 통합으로 관리 포인트 감소
- 주기적 알림을 통한 지연 및 누락 업무의 최소화

### 기능적 측면

- 스캐너 접속 없이 중앙에서 점검 수행 및 결과 확인
- 사내 업무 시스템(Mail, SSO, 결재 등)과 연계된 관리 체계 구축
- 진단 수행 및 결과, 조치이행 등의 이력 관리

## 핵심 요소와 법규, 지침 매핑

핵심요소	주요 인증지침
전자금융거래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제 21조의 3(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·평가) ① 금융회사 및 전자 금융 업자는 전자 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 금융 기반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·평가 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④ ②금융회사 및 전자 금융 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·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li></ul>
금융 전산 보안 강화 종합 대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CEO 책임하에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이행 철저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절차 마련 등 취약점 보완조치를 철저히 이행토록 제도 마련</li><li>- 非 금융 전산시스템까지 취약점 점검·보안관제 확대 전자금융기반시설 이외의 교육·홍보용 홈페이지, 그룹웨어 등 내부 업무 지원 시스템에 대해 취약점 점검 의무화</li></ul>
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지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제 13조(취약점 분석·평가)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최초 취약점 분석·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1년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. ③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·평가에 관한 기준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·평가의 대상, 기간, 절차, 방법, 소요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취약점 분석·평가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li></ul>
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립·운영하고 있는 기술적·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</li><li>- 제 18조의 11(운영보안) 정보시스템이 알려진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적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들은 조치하여야 한다.</li></ul>

※ 관련 법적 근거

금융위원회 「전자금융거래법」, 「금융 전산 보안 강화 종합 대책」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전 미래창조과학부) 「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지침」, 「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」